목포시 공고 제2026 - 429호

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3. 16.

목 포 시 장

1. **지정목적** :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목포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2. **신청기간** : **연중 수시**
3. **신청대상** :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
4. **신청방법** :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(지역경제팀) 방문 접수
5. **지정요건**

   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

   나.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이 운영하는 점포가 2,000㎡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

* 소상공인 : **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**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

6. 지원내용

가.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

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

【예시】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(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,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)

7. 지정절차

상인조직 구성 및 지자체 등록 (상인회 → 목포시)	▶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 (목포시)	▶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·의결 (심의위원회)	▶ 골목형상점가 지정·고시 (목포시)

8. 신청 구비서류

상인회 등록신청	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
1.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2.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(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) 3. 총회 회의록 1부. (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내용 포함) 4. 규약 또는 정관 1부 (명칭, 업무구역, 목적, 사업내용, 총회와 이사회, 임원선출방법,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) 5. 사업계획서 1부 6. 재산명세서 1부	1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2.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 3.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/2 이상 동의서 1부 (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) 4. 해당 구역 도면 및 지번, 면적 1부

※ 동의인은 구역 내 전체 상인(1점포 1인 기준) 대상으로, 동의인 수는 아래 사항에 따름

구 분	동의인 수
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	**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**
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	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

※ 면적 산출 시 구역 내 건물의 1층 면적의 합으로 계산 (도로, 공원 등 공용면적 제외)

※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견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름

※ 첨부파일 구비서류 서식(표준안)을 참고하여 작성

9. **지정통보** :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

10. **유의사항**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나. 서류의 기재착오, 연락불능,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

다. 신청 구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

라.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, 사업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으로 홍보·활용될 수 있음

마.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를 참고 바람

11. **문 의 처** :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(☎061-270-8638)

붙임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출서류 양식 1부. 끝.